

	<h2 style="margin: 0;">부설연구소관리규정</h2>	규정번호	3-7-6
		제정일자	1999.04.20.
		개정일자	2023.05.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전략기획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설연구소라 함은 각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연구소를 말한다.

### 제2장 설 립

제3조(설립신청) ①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략기획처를 거쳐 총장에게 매년 3월 말일과 9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설립계획서[별지제2호서식]
3. 연구소의 규정안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내용
4. 조직
5. 운영위원회
6. 재정

제4조(설립기준) 연구소의 설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분야가 대학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하여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대외 연구비의 획득,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 연구 위상의 격상을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사업계획의 내용이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
4.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전임교수의 연구실적이 설립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인가) 연구소의 설립인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가한다.

### 제3장 운 영

제6조(구성) 각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명과 운영위원을 두고, 필요한 기구와 연구소 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 ③ 연구소장과 운영위원은 대학의 다른 연구소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연구교수, 연구원 및 연구조교)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과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연구교수, 연구원과 연구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연구교수, 연구원과 연구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
2.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제12조(연구비 예탁) ①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소 명의로 은행에 기금으로 예탁하고 연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 총수령액의 5~20%의 범위 안에서 본교 및 연구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장은 연구비에서 일정비율로 제공받은 수입의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매 학기 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소는 매학년 초에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략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는 학년 말에 전략기획처에 연구활동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결산)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전략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 예산의 편성과 결산 및 그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 결정
2. 연구소의 중요한 정책결정
3. 간사, 연구교수, 연구원의 임면
4. 예산과 결산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연구소장 부재시에는 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의장은 매학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평 가

제18조(평가방법) 연구소는 부설연구소운영결과보고서[별지제3호서식] 및 당해 연도 실적물을

근간으로 교무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19조(평가기준) 연구소의 평가기준은 부설연구소 평가표[별지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평가시기) 연구소의 평가는 매 학년도 1학기 개강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개시 30일 전에 각 연구소장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폐쇄) 연구소의 당해연도 평가결과가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미만일 경우 폐쇄조치 수 있으며, 폐쇄된 연구소의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설립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